

『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』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6. 11.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 이유

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7조에서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부과 부서에 통지 하도록 한 것에서 부과대상을 명문화하였음

3. 참고 사항

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

『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』

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7조(부과대상의 통지)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)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후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, 부담금 부과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7조(부과대상의 통지) 건축허가관련 부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후 지체없이 부담금의 부과부서(이하 “부과부서” 라 한다)와 협의하여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부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	제7조(부과대상의 통지) 건축허가 관련 부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)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후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, 부담금 부과부서에 통지 하여야 한다

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반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기반시설부담금”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3. “부담률”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.

제3조(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
3. 국가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한다.

제6조(기반시설 부담률) 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.

제7조(부과대상의 통지)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(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)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후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, 부담금 부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

제9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